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 금지 및
중대한 과실로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등〉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75, 2213576,
221357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개요	1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II . 검토의견	5
1. 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 금지 및 중대한 과실로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5
2.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경위 확인 실효성 확보	14
※ 참고자료	19

I. 개 요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전현회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5. 10. 14.

(3) 회부일 : 2025. 10.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담당자가 고의·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전현회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5. 10. 14.
- (3) 회부일 : 2025. 10.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5. 10. 14.
- (3) 회부일 : 2025. 10.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 금지 및 중대한 과실로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안 제12조,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2건의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¹⁾함에 따라 이 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 ⑨ (생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 ⑧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u>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② ~ ④ (생략)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 설></u>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u>누구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u> ----- ----- -. ----- -----. ② <u>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 ⑤ (생략) 제30조(벌칙)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2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22조(벌칙)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5. (생략)	<u>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u>
② ~ ④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즉 고의로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제12조제1항)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제30조제1항제2호)하고 있음²⁾.

○ 그런데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³⁾ 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의 과실로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⁴⁾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3년간 신고자 비밀 유출 관련 고발 현황>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3) 권익위에 따르면, 색출행위에 의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사례로는 ○○부장관이 제보편지를 받은 후 기강 확립차원에서 투서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라고 지시하거나, ○○진흥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부에서 특별직무감사를 진행하자 면담 형식을 빌려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보 여부를 확인한 사례 등이 있음.

4) 권익위에 따르면, 과실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사례로는 공직자가 신고자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 발송하거나 정보공개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을 유출한 경우 등이 있음.

연도	2023	2024	2025
권익위 고발 건수(건)	5	1	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①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⁵⁾’로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② 공익신고자 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을 방지하고, 색출행위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나머지 2건의 개정안은 특정 조항의 의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의무에 따른 처벌 규정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⁶⁾을 고려하여, 준용규정의 벌칙 적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5) 중대한 과실 관련 판례: 2014다68891(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224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위법 행위	벌칙 규정	
	현행	개정안
고의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는 행위(§12①)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 3년·3천만원)	(현행과 같음)
<u><신 설></u> 중대한 과실로 위 사항을 공개·보도하는 행위(§12①)	<u><신 설></u>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 3년·3천만원)
<u><신 설></u>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12②)	<u><신 설></u>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 3년·3천만원)

□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형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⁷⁾. 현행법상 특정 비밀이나 기밀 등을 공개한 행위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비밀의 내용이 군사기밀, 산업기밀 등에 해당하는 바⁸⁾, 신고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가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무부는 군사기밀 또는 산업기밀에 준하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7)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8) 중과실 공개 등 처벌 입법례(참고자료) 참조(p.20)

위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까지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최후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⁹⁾.

- 둘째,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은 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라고 지시하는 행위 등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¹⁰⁾.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라는 주관적 목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고발행위는 자신의 명예회복,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 등의 정당한 권리구제 목적과 신고자 색출 목적이 혼재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처벌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목적범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색출목적이 다른 목적과 병존하는 경우 그 우월성 또는 주도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공익신고 제도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와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한 고발은 제외하거나, 신고자 색출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9) 제21대국회 동일한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김원이의원안, 의안번호 제2110841호)에 대한 의견

10) 관련하여, 제21대국회에서 신고자 색출행위를 금지하려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음
“공익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홍성국의원안, 의안번호 제2107892),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양정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120096호)
(김원이의원안, 의안번호 제2110841호) 등

개정안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과실범은 행위자의 부주의로 인한 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고의범에 비해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고의범보다 법정형을 낮게 하는 것이 원칙¹¹⁾이나, 개정안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¹²⁾.

또한, 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 행위에 대한 형벌 수준을 직접적인 공개·보도 행위(제12조제1항)¹³⁾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은 3년·3천만원), 이와 동일한 형량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이 법을 준용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발의되어 있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

11)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790

12) 예를 들면, 「군형법」은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하여, 고의범과 과실범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 ③ (생략)

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¹⁴⁾도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규정이 있으므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섹출성 고발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고, 과실에 의한 신고자 신분 유출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경위 확인 실효성 확보

-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도 권익위가 경위를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권익위의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생 략) <u><신 설></u>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u>보</u> <u>도되었을 때에는</u> 그 경위를 확 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u>제2항에</u> 따른 경 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 ----- ----- <u>보</u> <u>도된 경우 또는 제2항을 위반</u> <u>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u> <u>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u> <u>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u> <u>우에는</u> -----. ④ ----- <u>제3항에</u> ----- ----- -----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
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
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

-----,

-----.

⑤ -----

사람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
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의-----

-----,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③ (생략)	1.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이 유출된 경우 권익위가 그 공개·보도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제12조제2항), 이를 위해 해당 공익신고 등을 받은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동조 제3항),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동조 제4항) 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신고자 비밀 유출 관련 징계 요구 현황>

연도	2023	2024	2025
징계 요구 건수(건)	4	1	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이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중과실에 의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과 공익신고자 등 색출을 위한 고발의 경우에도 권익위가 그 경위를 확인하고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권익위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원 이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경위 확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중과실에 의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과 공익신고자 등 색출을 위한 고발의 경우에도 권익위가 그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는 이를 현행법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지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경위 확인을 위한 권익위의 자료제출 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규정(과태료)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의 발생 여부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관련 권익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¹⁵⁾하고 있으나,

실제 거부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동법 준용에 따른 벌칙 적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자료 제출·의견 진술 불응에 대한 과태료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7

-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략)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벌칙)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